

제 559 호
1976. 6. 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43 호	서울특별시 종축금예탁조례 폐지조례..... 3
제 1044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시설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3
제 1045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면허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
제 1046 호	서울특별시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 4
◎ 규 칙	
제 1590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현업기관설치 규칙중 개정규칙..... 5
◎ 교 시	
제 94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644

Handwritten signature or initials

Handwritten marks and numbers: 15, 1, 01, 33

제 12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7
제 12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8
제 130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9
제 13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지적승인	12
◎ 공 고		
제 136 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 지급공고	12
◎ 사 령		13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축금예탁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6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43 호

서울특별시중축금예탁
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중축금 예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기금 특별
회계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6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44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 1 조 (설치) 이 조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제 15 조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설개선을
위한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적정
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 시설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서 그 세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
년도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 3 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시장 대행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의
전부와 수수료의 2 할, 정부의 보
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사업에 부대되는 기타의 수입
금으로 충당한다.

제 4 조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
의 시설개선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시장

2. 운영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우수한 시장

3. 시설개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4. 기타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제 5 조 (준용)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면허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6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45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면허세 과세면제에 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 402 호 (1965.9.

18)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면허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적업무 수수료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6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46 호

서울특별시 지적업무 수수료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법시행령 제 67 조 및 제 68 조와 동법시행규칙 제 24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수수료의 반환금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현업기관

설치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6월 1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90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현업기관

설치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현업기관 설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 2 호 기관명란중 "서울특별시지하철승무관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관 명	공 무 원		분 장 사 무
	종 류	직 명	
서울특별시 지 하 철 승무관리소	선임지도 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 직원에 대하여 설기지도, 기술교양교육 및 승무감독과 전차운전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명을 받았을 때에는 운전기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 무 원	지방행정주사 보 또는 지방행정서기	소장을 명을 받아 소내서무, 수입금 관리 및 수불, 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서무를 처리한다.

기 관 명	공 무 원		분 장 사 무
	종 류	직 명	
서울특별시 지 하 철 승무관리소	지도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운전기사 및 차장의 실기지도, 기술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승무감독과 필요에 따라 차내 검찰업무와 명을 받았을때 운전기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구내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차량기지 및 역구내에서 동력차의 운전과 입환작업, 승무원의 근무표작성, 운전통제 및 기타 소내 운전에 관한 업무보조에 종사한다.
	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열차 및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다. 다만, 열차가 역외에 있을 때에는 차장, 열차가 역에 있을 때에는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 장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소장의 명을 받아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의 운전에 따른 업무, 여객취급, 차내 질서유지, 기타 열차내 제반업무에 종사하며 필요에 따라 역에서 또는 차량의 입환작업에 종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94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를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4. 30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대양학원 (수도여자사범대학)	성동구 군자동, 송정동, 능동 일부	104,190㎡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2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8 호 (76.1.21) 로
시설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게 한다.

1976. 6. 8.

서울특별시장

○ 도로 지적 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대로	3	112	25 m	350 m	시청앞광장	한국은행앞	소공로확장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p>◎ 서울특별시 고시제 129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p> <p>1. 당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신설, 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권</p>					<p>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6. 6. 12.</p> <p>서울특별시 장</p>			
가.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폐지	소로	3 류		3-6m	40 m	신길동 414-36	신길동 414-36	
"	"	"		"	100 "	" 448-46	" 448-16	
기정	"	"		6 m	520 "	" 405-27	" 445-11	
변경	"	"		6 "	520 "	" 405-27	" 445-11	위치변경
기정	"	"		6 "	770 "	" 379- 1	" 425-20	
변경	"	"		6 "	770 "	" 379- 1	" 425-20	위치변경
신설	"	2 류		8 "	410 "	" 411-28 앞구거	" 448- 6 앞구거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30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전기
공급설비)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2 호 (76.1.21)

로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실
시계획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서
울특별시고시제 60 호 (76.3.27) 로
시설 일부 변경함에 따라 실시
계획 인가 일부 변경 인가하고
동법제 26 조 및 대통령령 제 7754
호 (75.8.2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 시행청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전원부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 14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 은수동
산 17 - 1 의 11 필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인가
변경

3. 사업시행 면적 : 17,560 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5. 사업착수, 준공예정일 :

가. 착수 년월일 : 1976. 5. .

나. 준공 예정일 : 1976.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
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15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및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영등포구 은수동 산 17-1	임	2,850	종로구 신문로 2가 1-12	성해자	종로구 중학동 86	박영태	기등기권자
" 산 17-30	"	300	영등포구 은수동 13	이영수	없 음		
" 45- 8	대	70	종로구 신문로 2가 1-12	성해자	"		미 등 기
" 45- 9	전	210	"	"	"		"
" 45-10	대	72	"	"	"		"
" 45-11	잡	387	"	"	"		"
" 산 17- 4	임	600	종로구 남창동 6	"	"		"
" 산 17- 5	"	480	"	"	"		"
" 산 17-23	"	98	"	"	"		"
" 산 17-24	"	138	"	"	"		"
" 산 45- 1	전	83	마포구 도화동 7	김만경	"		"
" 산 45-15	대	31	"	"	"		"

15-10 제 559 호

지

보

1976.6.11

4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대한 관계인 주소성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영등포구 은수동 산 17-1	임	2,850	종로구 신문로 2가 1-12	성해자	종로구 중학동 86	박영태	기등기권자
" 산 17-30	"	300	영등포구 은수동 13	이영수	없	음	
" 45- 8	대	70	종로구 신문로 2가 1-12	성해자	"	"	미 등 기
" 45- 9	전	210	"	"	"	"	"
" 45-10	대	72	"	"	"	"	"
" 45-11	잡	387	"	"	"	"	"
" 산 17- 4	임	600	종로구 남창동 6	"	"	"	"
" 산 17- 5	"	480	"	"	"	"	"
" 산 17-23	"	98	"	"	"	"	"
" 산 17-24	"	138	"	"	"	"	"
" 산 45- 1	전	83	마포구 도화동 7	김만경	"	"	"
" 산 45-15	대	31	"	"	"	"	"

제 559 호
1976.6.11 15-11

0649

13

06

48

11
11

◎ 서울특별시고시제 13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대통령령 제 7754 호(75.8.22)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 14

서울특별시장

○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1		10m	200m	성동구 군자동 205-213	성동구 군자동 205-425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36 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직 수당 지급공고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당 지급 대상자

공립초, 중등 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

가. 연 령

1) 60세 이상

2) 신체 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 이상

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 경력통산)

- 1) 30년 이상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
 -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
 - (나) 재직중 각급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
 - (다) 재직중 도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

2. 수당지급일 : 1976년 8월 31일

3. 신청기간 : 1976년 7월 21일 ~ 7월 30일 (10일간)

4. 신청절차

소정 신청서에 건강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소속 기관 및 감독청을 거쳐 시, 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5. 지급액

기준 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

6. 지급 절차

가. 대상자 결정 통지

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에게 통지한다.

나. 수당지급장소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7. 기타 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 또는 당 교육위원회에 문의할것.

1976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

사 령

◎ 1976.6.8

세 정 과 시 기 관 박순철
지방서기관에 임함.
은명출장소장에 보함.

◎ 1976.6.10

중 구 지방행정 유동철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항 1, 2, 3호
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지방행정 권정복
주 사

76.5.11자. 대법원 특별부 파면처분
취소 확정판결 (사건 75누70)에 따
라 73.8.31. 징계처분 (파면)을

<p>동일자로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 23 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 1976.6.12</p>	<p>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박응용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용산구 지방행정 서기 박영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홍연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도로시설과 지방토목 기사보 김학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6. 6. 14</p>
<p>동부병원 지방행정 서기 강용웅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 신영우 도로시설과 도로계장에 보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김상봉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6. 6. 15</p>
<p>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윤성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보건예방과 지방행정 주사보 유영진</p>	<p>서대문구보건소 지방간호 기사보 박병희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남부병원 지방간호 기사보 김부자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p>	<p>남부병원 지방간호 기사보 서경희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14

<p>아 동 병 원 지 방 간 호 이 혜 구 기 원 보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동 부 병 원 지 방 간 호 장 숙 최 기 원 보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p>
<p>아 동 병 원 지 방 간 호 채 순 자 기 원 보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서 대 문 병 원 지 방 간 호 김 정 옥 기 원 보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아 동 병 원 지 방 간 호 장 정 태 기 원 보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남 부 병 원 지 방 간 호 하 영 주 기 사 보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아 동 병 원 지 방 간 호 심 순 임 기 원 보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성 동 구 지 방 행 정 윤 종 각 사 무 관 중구 근무를 명함.</p>
<p>관 악 구 보 건 소 지 방 간 호 김 말 속 기 원 보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서 울 특 별 시 장